

2024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연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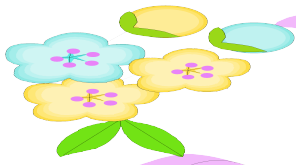
일시: 2024년 3월 20일 (수)



바른 인성, 건강한 감성, 즐거운 배움으로 미래를 가꾸는

상록초등학교

<http://sangrok-asn.es.kr>



학부모 연수 순서

1. 상록 교육목표 및 구현계획
2. 2024학년도 학사 일정 안내
3. 출결 관련 확인 제출자료 안내
4. 학교교육평가
5. 선행교육 예방(공교육정상화법)
6. 학생 안전 교육
7. 성폭력 예방 교육
8.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
9. 학생 인권조례 및 교권보호
10. 방과후학교 운영
11. 초등돌봄교실(오후돌봄) 운영
12. 학부모 서비스 신청 안내
13. 정보통신윤리교육
1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계획
15. 불법찬조금 근절
16. 아동학대 예방 교육
17. 가정폭력 예방 교육
18. 생명 존중 및 생명 살림(자살 예방) 교육
19.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녹색, 학부모폴리스)
20. 학교폭력 예방 교육
21. 감염병 예방 교육
22. 청탁금지법
23. 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 신고 보상 안내
24. 존중과 배려의 교육환경 조성 예방 교육(갑질 근절)
25. 교육활동보호예방교육

1 상록 교육 목표 및 구현 계획

비전

바른 인성, 건강한 감성, 즐거운 배움으로
미래를 가꾸는 어린이

교육
목표

바른 인성으로 존중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주적인 어린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예술을 향유하는
문화적인 어린이

특기와 소질을
가꾸어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어린이

중점
교육

상록수(3H) 중점 교육활동

상(常), Heart

- ☞ 소통하는 공동체
- ☞ 하나되는 세계시민교육
- ☞ 나눔, 배려, 함께하는
인성교육

록(綠), Health

- ☞ 감성이 자라는 예술교육
- ☞ 놀이와 숨이 있는 교육
- ☞ 체험중심 생태환경교육

수(秀), Head

- ☞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
- ☞ 독서인문교육
- ☞ 다양한 진로 교육 운영

학교상

참여와 즐거운 배움의 열기로
신나는 학교

학생상

교사상

학부모상

큰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
건강한 인성 감성을 가진
어린이

미래를 키워주는 교사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는 교사

참여하는 학부모
믿음을 갖는 학부모

구현중점	교육활동	시기	대상	관련부서
11. 소통하는 공동체	111. 학교 교육 환경개선 ○ 교실 학습 환경 구성 ○ 학년 및 학급 규칙 제정 및 준수 ○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인권규정 제정 준수	3월,9월 3월 연중	4~6학년 1~6학년 1~6학년	생활인권
	112. 학교교육 참여기회 확대 ○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 ○ 학교 교육 설명회 ○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기회 확대 ○ 수업 공개의 날 운영	연중10회 2회 연중 5월	학운위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생활인권 생활인권 생활인권 교육과정
	113.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 운영 ○ 학년별 협의회 구성 ○ 자율과정과 연계되는 학습공동체 운영 ○ 자율적인 참여로 집단지성 발휘	연중	전교사	교육과정
12. 하나되는 세계시민 교육	121. 학생 자치 활동 능력 신장 ○ 전교 어린이회 임원 선출 ○ 전교 어린이회 운영 ○ 학급임원선출	7월,12월 연중 3월,8월	3~6학년 1~6학년 2~6학년	생활인권
	122. 인권교육 및 평화 교육 ○ 평화교육(민주시민교육) ○ 인권교육주간 운영 ○ 장애학생 이해교육 ○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연중 연중 연중 연중	1~6학년	생활인권
13. 나눔, 배려, 함께하는 인성교육	131.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 인성교육 실천주간 ○ 학급별 특색있는 인성교육 ○ 친구사랑의 날 ○ 예절교실 운영	연중 연중 4,11월 연중	1~6학년	생활인권
	132. 학교폭력 예방교육 ○ 교외 생활 지도 ○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 방학 전 생활안전교육주간 운영 ○ 위클래스(상담실) 운영	방학중 연중 학기말 연중	전교사 1~6학년 1~6학년 1~6학년	생활인권
	133. 생명존중교육 ○ 자살예방교육 및 예방활동 실시 ○ 교과 및 창체 연계 생명존중교육, 환경지킴이 교육 실시	연중	1~6학년	생활인권

록(綠)

2.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예술을 향유하는 문화적인 어린이

구현중점	교육활동	시기	대상	관련부서
21. 감성이 자라는 예술교육	211.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아르떼 예술강사 무용 수업 ○1인 1악기(칼림바) ○문화예술교실(악기교실) ○상록 문화예술의 날	연중 연중 연중 11월	1~4학년 1~6학년 1~6학년 1~6학년	교무기획 교무기획 교무기획 교무기획
	212.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반별 학교 스포츠 클럽 조직 및 운영 ○스포츠클럽데이 운영	연중 11월	2~6학년	5학년부
	213. 건강, 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출넘기 급수제 실시 ○건강체력교실 운영 ○건강365교실 ○학생 생존수영 교육 ○해양 안전 체험 활동	연중 연중 연중 5-6월 3월	1-6학년 1-6학년 5-6학년 3-4학년 6학년	5학년부
22. 놀이와 쉬이 있는 교육	214. 놀이와 쉬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년별 놀이교실 확보 ○매주 수요일 1,2교시 블록타임-놀이시간확보 ○학년별 놀이교실에 놀잇감 확보 ○점심식사 후 자유놀이 시간 확보	연중	1-6학년	교육과정
23. 체험중심의 생태환경교육	231. 생태전환교육 ○숲체험 교실 운영 ○탄소중립 환경교육 실시 ○교과 연계 환경교육 실시 ○환경교육주간 운영	4월,10월 연중 연중 6월	1-4학년 1-6학년 1-6학년 1-6학년	교무기획
	232. 학교 교재원 운영 ○학교 교재원화 ○재배원 관리 ○수생식물원 관리	연중	전교생	교무기획
	233. 절약교실 실시 ○학용품 아껴쓰기 ○에너지 절약 교육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교육	연중	전교생	생활인권

수(秀) 3. 특기와 소질을 가꾸어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어린이

구현중점	교육활동	시기	대상	관련부서
31.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	331. 교육정보화 지원확대 및 학습 준비 철저 ○ 컴퓨터실 정비 및 각종 교육 S/W 구비 ○ 방송실의 효율적 운영 ○ 학습준비물의 효율적인 선정 및 구입	7, 2월 연중 연중	1~6학년	생활인권
	332. 학교홈페이지 및 알리미 체제 운영 ○ 학교홈페이지 구성 및 활성화 ○ 하이클래스를 활용한 교육 주체 간 소통	연중	1~6학년	생활인권 교무기획
	333. 에듀테크교육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강화 ○ 에듀테크교육 환경 구축 ○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및 저작권 교육 강화 ○ SW 교육(미래체험) 프로그램 체험 기회확대 ○ 디지털 시민교육(코딩교실 운영)	연중 연중 연중 2학기	1~6학년 1~6학년 1~6학년 1~4학년	생활인권
32. 독서인문교육	231. 독서교육의 활성화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온책읽기 ○ 질문과 토론이 있는 독서토론교육 운영	연중 연중	1~6학년 1~6학년	교육과정
	232. 독서인문교육을 돕는 도서관 운영 ○ 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 도서관 활용 수업 활성화 및 도서 확충 ○ 독서 교실 운영 ○ 학생 참여의 독서 행사 운영 ○ 독서인문교실-작가와와의 만남 ○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3월 연중 방학중 연중 5-6학년 1-6학년	1~6학년 1~6학년 1~6학년 1~6학년 11월 1회	교육과정
33. 다양한 진로 교육 실시	331. 꿈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 진로체험교실 운영 ○ 교과 및 창의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운영 ○ 학년 수준에 맞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 사이버 진로교육 운영-커리어넷	연중 연중 2회 연중	1~6학년 1~6학년 1~6학년 4~6학년	생활인권
	332. 진로연계교육 실시 ○ 1-2학년은 성장이음과정 실시 ○ 3학년은 교과목 설명 및 전담과목 및 안내 ○ 6학년은 초등학교 마무리 및 중학교 적응을 위한 학교 자율과정 운영	학년초 학년초 학년말	1-2학년 3학년 6학년	교육과정

2 2024학년도 학사 일정

※ 겨울방학 중 석면교체 및 LED설치 공기 확보(70일) 위해 여름방학 단축 및 겨울방학 70일 운영

1. 1학기 수업일수

월	주	기간	요일별 날짜							휴업일수	수업일수			월별 수업일수	공휴일 및 학교행사활동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교행사	교과운영	계		
3	1	03.04~03.08.	3	4	5	6	7	8	9	0	2	5	5	20	3.1.(금) 삼일절 3.4.(월) 시업식, 입학식. (4교시) (1학년:급식 미실시,2·6학년:급식 실시) 3.11(월)-3.15(금) 진단활동주간(2~6학년) 3.8.(금) 1학기 학급임원선거 안산화정영어마을체험학습(5학년) 3.15,18:5-1/3, 19,20:5-2,3/3.21,22:5-4,5 3.20(수) 학부모총회, 교육과정설명회 3.18.(월)-3.22.(금) 생명존중교육주간
	2	03.11.~03.15.	10	11	12	13	14	15	16	0	0	5	5		
	3	03.18.~03.22.	17	18	19	20	21	22	23	0	1	5	5		
	4	03.25.~03.29	24	25	26	27	28	29	30	0	0	5	5		
4	5	03.31.~04.05.	31	1	2	3	4	5	6	0	0	5	5	24	4.1.(월)~4.5.(금) 건강평가주간 4.1.(월)~4.5.(금) 학부모상담주간 4.10.(수) 20대 국회의원선거 4.15.(월)-4.19.(금)아동학대예방교육주간 4.18.(목) 장애이해교육 4.19.(금) 과학의 날 행사 4.22.(월)~29.(월) 학년별 체육대회 (22:1,23:2,24:3,25:4,26:5,29:6) 숲체험교실(1학기) 1학년:4.29-4.30 2학년:4.17-4.18 3학년:4.15-4.16 4학년:5.2-5.3
	6	04.08.~04.12.	7	8	9	10	11	12	13	0	0	4	4		
	7	04.15.~04.19.	14	15	16	17	18	19	20	0	1	5	5		
	8	04.22.~04.26.	21	22	23	24	25	26	27	0	0	5	5		
	9	04.29.~05.03.	28	29	30	1	2	3	4	0	0	5	5		
5	10	05.07.~05.10.	5	6	7	8	9	10	11	0	0	4	4	18	5.5.(금) 어린이날 5.6.(월) 대체휴일 5.15.(수) 석가탄신일 5.7(월)5.7(금) 인성교육주간, 학생인권교육주간 5.17.(금) 학부모공개수업 5.20.(월)~24.(금) 방과후학교 수업공개 5.29.(수) 소방훈련(변동 가능)
	11	05.13.~05.17.	12	13	14	15	16	17	18	1	0	4	4		
	12	05.20.~05.24.	19	20	21	22	23	24	25	0	1	5	5		
	13	05.27.~05.31.	26	27	28	29	30	31	1	0	1	5	5		
6	14	06.03.~06.07.	2	3	4	5	6	7	8	1	0	4	4	19	6.3.(월)~6.7.(금)환경교육주간 6.6(목) 현충일 6.10.(월)~6.14(금) 성폭력예방교육주간 6.10.(월)~6.14.(금)가정폭력예방교육주간 6.25.(화) 통일교육 6.26(수)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연수
	15	06.10.~06.14.	9	10	11	12	13	14	15	0	0	5	5		
	16	06.17.~06.21.	16	17	18	19	20	21	22	0	0	5	5		
	17	06.24.~06.28.	23	24	25	26	27	28	29	0	0	5	5		
7	18	07.01.~07.05.	30	1	2	3	4	5	6	0	0	5	5	19	7.8(월)~7.12(금) 흡연예방교육주간 7.11.(목) 2학기 전교임원선거 6학년 해양안전체험 7.2.(화)1반 7.8.(월)2반 7.15.(월)3,4반, 7.16.(화)5반 7.25(목)여름방학식(교시) (급식 실시)
	19	07.08.~07.12.	7	8	9	10	11	12	13	0	0	5	5		
	20	07.15.~07.19.	14	15	16	17	18	19	20	0	1	5	5		
	21	07.22.~07.26.	21	22	23	24	25	26	27	0	1	4	4		
1 학 기 합 계									3	5	100	100	100		
여름방학									2024. 07. 26.(금)~2024. 08. 08.(목) 14일						

※ 2024학년도 석면교체 및 LED 설치 공사 일정 변경 시 방학 중 공기확보를 위해 학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2학기 수업일수

※ 10.1.(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시 10.4.(금) 학교장재량휴업일 미운영

월	주	기간	요일별 날짜							휴업일수	수업일수			월별수업일수	공휴일 및 학교행사활동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교행사	교과운영	계			
8	1	08.05.~08.09.	4	5	6	7	8	9	10	0	0	1	1	15	8.9.(금) 개학식(4교시)(급식실시) 8.16.(금) 2학기 학급임원선거	
	2	08.12.~08.16.	11	12	13	14	15	16	17	1	1	5	4			
	3	08.19.~08.23.	18	19	20	21	22	23	24	0	0	0	5			
	4	08.26.~08.30.	25	26	27	28	29	30	31	0	0	5	5			
9	5	09.02.~09.06.	1	2	3	4	5	6	7	0	0	5	5	17	9.2.(월)-9.6.(금) 양성평등실천주간 9.9.(월)-9.13.(금) 생명존중교육주간 9.14.(토)-9.18.(수) 추석연휴 9.24.(화)1학년 1,2반 현장체험학습 9.26.(목)1학년 3,4반 현장체험학습 9.24.(화)4학년 1,2반 현장체험학습 9.26.(목)4학년 3,4반 현장체험학습 9.26.(목)6학년 1,2반 현장체험학습 9.27.(금)6학년 3,4,5반 현장체험학습	
	6	09.09.~09.13.	8	9	10	11	12	13	14	0	0	5	5			
	7	09.19.~09.20.	15	16	17	18	19	20	21	3	0	5	2			
	8	09.23.~09.27.	22	23	24	25	26	27	28	0	0	5	5			
10	9	09.30.~10.04.	29	30	1	2	3	4	5	2	0	3	3	22	10.3(목) 개천절 10.4.(금) 학교장재량휴업일(1일) 10.9.(수) 한글날 10.8(화)5학년 1,2,3반 현장체험학습 10.10(목)5학년 4,5반 현장체험학습 10.14.(월)-10.18.(금)학생인권교육주간 10.15(화)3학년 1,2반 현장체험학습 10.17(목)3학년 3,4반 현장체험학습 순체험교실(2학기) 1학년:10.14-10.15 2학년:10.16, 10.18 3학년:10.21-10.22 4학년:10.28-10.29 10.21.(월)-10.25.(금)독도교육주간 10.28.(월)2학년 1,2반 현장체험학습 10.29.(화)2학년 3,4반 현장체험학습 10.30.(수) 재난안전훈련 10.30.(수) 교직원 심폐소생술연수	
	10	10.07.~10.11.	6	7	8	9	10	11	12	1	0	4	4			
	11	10.14.~10.18.	13	14	15	16	17	18	19	0	0	5	5			
	12	10.21.~10.25.	20	21	22	23	24	25	26	0	0	5	5			
	13	10.28.~11.01.	27	28	29	30	31	1	2	0	0	5	5			
11	14	11.04.~11.08.	3	4	5	6	7	8	9	0	0	5	5	20	11.11.(월)-11.(금)아동학대예방교육주간 11.11.(월)~11.15.(금) 방과후학교 작품 전시회 11.13.(수) 상록문화예술의 날 11.25.(월)-11.29.(금) 독서교육 주간	
	15	11.11.~11.15.	10	11	12	13	14	15	16	0	0	5	5			
	16	11.18.~11.22.	17	18	19	20	21	22	23	0	0	5	5			
	17	11.25.~11.29.	24	25	26	27	28	29	30	0	1	5	5			
12	18	12.02.~12.06.	1	2	3	4	5	6	7	0	0	5	5	16	12.3.(화)장애이해교육 12.5.(목) 2025년 1학기 전교임원선거 12.23.(월) 졸업식(1~5학년 2교시) 졸업식(6학년 4교시) (급식 미실시)	
	19	12.09.~12.13.	8	9	10	11	12	13	14	0	1	5	5			
	20	12.16.~12.20.	15	16	17	18	19	20	21	0	0	5	5			
	21	12.23.~12.27.	22	23	/	/	/	/	/	0	1	1	1			
2 학 기 합 계									7	2	78	79	90	연간 수업 일수	1학기	100일
1 학 기 합 계									3	5	100	100	100		2학기	90일
총 계									0	1	10	10	0		합 계	190일
겨울방학									2024. 12. 24.(화)~2025. 03. 03(월) 70일							
석면 제거 공사 기간									2024. 12. 24.(화)~2025. 03. 03.(월) 70일							

3 출결 관련 확인 제출자료 안내

교사 나○철

구분	내용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제출자료																	
결석	① 1일~2일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																	
	② 3일 이상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증빙서류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③ 미세먼지 기저질환 질병결석 대상: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인 학생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증빙서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학기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후 결석계만 제출(증빙서류 미제출)																	
	<table border="1"> <tr> <td>기준: 에어코리아 앱(휴대폰)</td> <td>인정 요건</td> </tr> <tr> <td>당일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td> <td>담임교사에게 08:50까지 사전 연락(하이톡, 하이콜)</td> </tr> </table>	기준: 에어코리아 앱(휴대폰)	인정 요건	당일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	담임교사에게 08:50까지 사전 연락(하이톡, 하이콜)														
기준: 에어코리아 앱(휴대폰)	인정 요건																		
당일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	담임교사에게 08:50까지 사전 연락(하이톡, 하이콜)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결석 사유임을 학교장이 미리 인정한 경우 해당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학부모확인서 또는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증빙서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미인정 결석	▶ 그 외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태만, 가출, 출석거부 등)로 결석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징계 등)로 인한 가정학습 기간, 미인정유학, 어학연수 캠프, 출석인정 일수 초과한 교외체험학습,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교환학습, 사전 미허가 가족여행 등	① 1~2일: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 ② 3일 이상: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 + 학부모확인서																	
출석인정결석	경조사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대상</th> <th>일수</th> </tr> <tr> <td>결혼</td> <td>형제, 자매</td> <td>1</td> </tr> <tr> <td>입양</td> <td>본인</td> <td>20</td> </tr> <tr> <td rowspan="3">사망</td> <td>부모 및 부모의 부모</td> <td>5</td> </tr> <tr> <td>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td> <td>3</td> </tr> <tr> <td>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td> <td>1</td> </tr> </table>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1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증빙서류 [청첩장, 부고장, 사망신고서(3일 이상) 등] ▶ 담임교사에 하이콜 또는 하이톡 연락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1																	
감염병 증상	▶ 감염병 질환(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금지): 수두, 수족구병, 결핵, 일본뇌염,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 결막염, 인플루엔자(독감:화진 검사 포함), A형 간염, 홍역 *비법정감염병:의료기관 '등교금지 필요하다' 증빙서류 있을 시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증빙서류 (의사소견서:병명, 진료 기간, 등교 가능 여부 등이 기재)																	
기저 질환 및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	▶ 기저질환: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 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장애: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장애복지카드 사본) ※ 결석 3일전까지 신청																	
코로나 백신 접종	▶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인정결석처리 ▶ 이상반응 발생 시 2일까지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접종 후 3일부터 질병결석 처리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증빙서류 (예방접종확인서,의사소견서 등)																	
코로나19	▶ 확진(양성) 시에는 격리 권고 기간 5일 출석 인정 ▶ 음성 시에는 당일 1일 출석 인정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증빙서류 (의사소견서,검사확인서,PCR양성 결과통보 메시지)																	
학교장 허가교외 체험학습	▶ 기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통합하여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 국외 신청시 비행기나 배편 e-ticket(왕복) 사본 첨부(증빙자료) ▶ 국가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만 가정학습 포함 (감염병 위기경보단계확인 : https://naver.me/55yVhEUd) ▶ 4시간 미만은 반일 운영단 반일은 당일 수업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신청서(국외 시 e-ticket 첨부)+결고보고서 * 3일 전 신청서 제출하여 사전 허가 후 실시,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사전 미허가 실시, 보고서 미제출, 허가 일수 초과 등: 미인정결석처리)																	

<서식1>

결재	담임	보건(협조)	학년부장
		감염병, 고위험군 관련시만	전결

결석계 ()학년 ()반 ()번 성명:	
결석기간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일간
결석사유	

※ 해당사항에 표시하세요.

결석 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담임교사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진료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의사소견서(진단서) <input type="checkbox"/> 입·퇴원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학부모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에는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 ★ 상세 사항: 뒷장 안내 참고	
출석 인정 결석	경조사	<input type="checkbox"/> 청첩장 <input type="checkbox"/> 부고장 <input type="checkbox"/> 사망신고서 ※ 1~2일: 청첩장, 부고장, 사망신고서 ※ 조문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3일 이상: 사망신고서(사본 가능)
	감염병 증상	<input type="checkbox"/> 의사소견서(진단서) ※ 병명, 기간, 등교가능 여부 등 기재
증빙 서류	기저 질환 및 장애 가진 고위험군 학생	<input type="checkbox"/> 의사소견서(진단서) ※ 결석 3일전까지 신청
	코로나 백신 접종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확인서(증명서, 내역서) <input type="checkbox"/> 의사소견서(진단서)
	코로나	<input type="checkbox"/> 양성:의사소견서(PCR양성결과 통보 메시지 등)(5일 출석인정) <input type="checkbox"/> 음성:검사 확인서(당일 1일 출석인정)
	생리통(여학생)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확인서(월 1일 출석인정)

202 년 월 일
보호자: (인)
상록초등학교장 귀하

★ 다음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 보호자 서명 없음, 증빙서류 미제출

- 제출서류(붉은색: 학부모 준비 서류)
1. 질병결석인 경우
 - ① 1일~2일: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담임교사 작성)
 - ② 3일 이상: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 +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2. 질병 이외의 결석 또는 출석인정 결석인 경우
 - ① 1~2일: [경조사]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 + 청첩장·부고장(문자, 카톡 포함), 사망신고서 중 1부
미인정 결석 및 기타 결석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
 - ②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3일 이상: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 + 사망신고서(사본 가능)
 - ③ 경조사 이외 출석인정 결석: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 + 증빙서류
 - ④ '①~③' 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3일 이상: 결석계와 담임교사확인서 + 학부모확인서
-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은 별도의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 교사 작성 -----

담임교사 확인서

1. 해당 결석 및 사유

<input type="checkbox"/> 질병 결석	<input type="checkbox"/> 미인정 결석	<input type="checkbox"/> 출석인정 결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석
사유			

2. 확인 방법

하이톡 확인 하이콜 확인 가정방문 학부형 내교 기타()

3. 비고:

202 년 월 일
담임교사 : (인)

4 학생평가-학습으로의 평가

교사 우○주

1. 학습으로서의 평가의 특징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학생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의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평가

2. 방침

- 가. 학생의 삶과 연계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운영으로 학생 개인의 삶의 역량을 키운다.
- 나. 학생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학습과정을 중시한다.
- 다.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한다.
- 라. 평가의 목표를 학생에게 미리 안내(매 학기 초 사전 안내)하여 학습 과정에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과정을 성찰하고,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종합하여 판단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바. 학습과 평가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생활 맥락 속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3.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및 방 법
진단 활동 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개학 후 2주 동안 ▶ 대상: 전교생, 교과 및 창체 ▶ 학생의 발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활동 속에서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기록하는 ‘진단활동’ 실시 ▶ 초3 맞춤형 자율평가 실시-문해력, 수리력 ▶ 2-6학년 진단평가 실시-국어, 수학
수행평가	교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으로 실시 · 학생의 자아개념, 가치관, 태도, 흥미, 책임, 협력, 동기 등 정의적 능력 평가 실시 · 각 학급의 지도내용에 따른 교사별 문제출제 및 평가 · 학습결손 요소 확인을 통한 처치, 학습활동 안내 · 평가 후 feed-back 시스템을 통한 누적된 학습부진의 예방 · 운영방법 :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소 단위 수업시간 등을 활용한 평가 -평가 후 feed-back 시스템을 통한 누적된 학습부진의 예방
	창의적 체험활동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년별로 정함. ·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 평가 결과는 평소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활동 실적, 성장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담임 또는 담당 교사가 수시로 기록.
행동특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 발달 단계에 맞는 평가 영역과 덕목을 선정하고 평가 척도 기준을 설정하여 수시로 관찰 기록한 후 종합적인 행동 특성을 문장으로 기술

5 선행교육 예방 (공교육정상화법)

교사 우○주

○ 선행교육

-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과정) 및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시·도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1항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학교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시·도교육과정·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 선행학습

-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1. 추진 근거 및 목적

가.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 2024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사업 추진계획(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379, 2024.1.31.)

나. 목적

-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 정상화 실현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생, 교원, 학부모 인식 개선 연수 및 홍보 강화
-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선행출제 점검·컨설팅을 통해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실시

2. 추진 계획

가. 연수 추진 계획

순	대상	시기	형태	내용
1	교원	4월	연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연수
2	학부모	3월	교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연수

나. 세부계획

- 교과별·학년별 교육과정과 평가 내용 일치 실천
- 선행교육 사전 예방을 위한 출제관리 및 자율점검 (학기별 1회)
- 교원, 학부모 대상 선행교육 예방 관련 연수 및 홍보(연 1회)

다. 교육공동체의 책무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 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학생 안전 교육

교사 김○희

□ 교육부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나.침.반 안전교육실시)

구분	세부내용
생활안전	시설 안전, 실내활동, 실외활동, 신체활동, 여가 활동안전, 식생활 안전
교통안전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선박, 항공, 철도 등) 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언어 및 신체폭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유괴 및 미아사고
약물·사이버 중독	흡연 및 음주, 의약품, 인터넷(게임 및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정보 보호 등
재난안전	화재, 폭발, 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등)
직업안전(초등 제외)	실험 및 실습, 특성화고 취업준비 등
응급처치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

1. 교통사고 예방

- 횡단보도, 건널목 신호등 지키기, 우측통행 준수 지도
- 인라인스케이트 및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지도(보호 장구 착용)
- 어린이 보호 구역(School Zone)에서의 교통안전 지도 및 홍보

가.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법

- ① 좁은 길,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는 일단 멈추어 좌우를 확인해야 함.
- ② 길을 건널 때는 도로 횡단 5원칙을 지키고 횡단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함.
- ③ 무단 횡단하지 않고, 초록불의 중간에는 건너지 않고 다음 신호를 기다림.
- ④ 초록불이 들어오더라도 급하기 뛰여 건너지 않고 좌우를 살핀 후 길을 건너기.
- ⑤ 차에서 내릴 때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주의하며, 정차된 차량 앞뒤로 길을 건너지 않기
- ⑥ 비가 오는 날에는 밝은색 계통의 비옷, 모자, 장화, 우산이 눈에 잘 띄.
- ⑦ 눈이 오는 날에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으며, 목도리·털모자를 착용하여 넘어졌을 때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음.

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법

- ① 몸에 맞는 자전거 선택: 발 앞부분의 반 정도가 땅에 닿는 자전거를 의미
- ② 안전한 복장 착용: 몸에 붙는 옷, 밝은색 옷, 운동화 착용(스커트, 펄럭거리는 바지, 슬리퍼, 샌들 금지)
- ③ 보호장구 착용: **안전모(머리손상으로 인한 사망자 70% 이상)와 보호장구(팔꿈치·무릎 보호대)**

를 반드시 착용

- ④ 안전 상태 확인: 타이어의 바람상태 및 브레이크 작동, 체인 등 확인
(‘픽시’의 경우에도 브레이크 달기)

⑤ 자전거도 ‘차’: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 준수하기, 반드시 시야가 좋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하기

- ⑥ 야간에 라이트 켜기: 라이트를 켜지 않은 자전거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함
- ⑦ 휴대폰/이어폰 자전거 운전 시 사용 금지: 이어폰을 꽂으면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매우 위험
- ⑧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건너기
- ⑨ 눈, 비가 오거나 짙은 안개가 낀 날에는 자전거 이용 금지
- ⑩ 교내에서는 자전거 탑승 및 주행 금지

다. 출입지점 관리

- 1) 학생은 **정해진 보행로로 등하교**: 차량 출입이 많은 경사로는 학생 출입 통제
- 2) 등하교 학생을 위해 교내 **외부 차량(학부모 차량 포함) 진입 금지, 교문 앞 주정차 금지**
- 3) 학생들의 교육활동 시간에는 **외부인(학부모 포함)을 통제**
 - ① 방문객은 배움터지킴실에서 관리대장에 성명 및 방문목적을 기재하고 방문증을 교부받는다. (신분증 지참)
 - ② 교내에서는 **반드시 방문증을 패용**하고 용무 후에는 방문증을 배움터지킴이실에 반납한다.

2. 유괴 예방

가. 신학기 대비 실종 유괴 예방 수칙

- 1) 비상시를 대비하여 자녀의 새 친구,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한다.
- 2) 부모의 허락 없이 낯선 사람의 차에 타지 않도록 하며, 얼굴을 아는 사람이어도 함부로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한다.
- 3) 자녀의 이름, 전화번호를 옷 안, 신발 안, 가방 안쪽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써둔다.
- 4)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를 데려오게 하거나 심부름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 5) 도로와 떨어져서 인도 안쪽으로 걷는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한다.
- 6) 통학로의 우범지역과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아이에게 위험한 곳을 미리 알려준다.
- 7)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 8)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종예방수칙(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을 반복해서 지도한다.

3. 불조심 예방

가.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 1) 낮은 자세로 기어서 피난해야 합니다.
- 2) 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열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나. 피난을 위한 복도, 계단에 적치된 물건은 없나요?

복도, 계단 등은 화재 발생 등 유사시 피난 통로로 사용됩니다. 계단에 문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하는 행위는 피난 시 장애가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가정에서 알아야 하는 상식

- 1) 가정과 차량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나요?
- 2) 화재 발생 등 유사시 피난 대피로는 알고 있나요? 피난 장소는 있나요?
- 3) 1회 누전차단기의 시험 스위치를 눌러보는 것으로도 전기화재는 예방됩니다.
- 4) 가스레인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월 1회 누설여부를 확인하세요.

▶ **작은 관심과 노력!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화재 신고는 전국 국번 없이 119**

7 성폭력 예방 교육

보건교사 김○혜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현황: 하루 25명 성폭력 피해(2018년도 국감자료)

-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
- 아동 청소년: 남자 피해자 4.1%
- 피해 연령: 평균 14.6세
- 피해 경로: SNS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게 의한 경우가 63.3%로 가장 높음

2. 성폭력이란?

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3. 자주 발생하는 ‘또래 성폭력·성희롱’ 행동은?

- 가. 야한 말이나 사진, 동영상 카카오톡, 밴드, SNS로 보냄
 - 나. 성장이 빠른 친구의 몸에 대해 지속적으로 놀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수시로 언급
 - 다. 여학생의 치마 속 등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친구들에게 공유
 - 라. 장난치는 척하면서 슬쩍 가슴이나 상대방의 생식기를 만짐
- ☞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성폭력 범죄이며, 가해자 행동임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지도하여야 합니다.

4.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좋은 습관

Safe! 안전하게 친구들과 생활하려면...

- 평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요.
-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확실하게 표현해요.
- 스킨십을 하고 싶다면 먼저 허락을 구해야 해요.
- 성적인 농담이나 놀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안 돼요.
- 여러 사람이 “뽀뽀해!” 등과 같은 성적인 행동을 시키거나 강요하면 안 돼요.
- 신체 노출이나 성적인 행동을 사진 찍어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안 돼요.

Help! 피해자가 주변에 있다면...

- 이런 말은 친구를 더 힘들게 해요!(뉘어두어라,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너도 잘못했네.)
-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절대로 소문내면 안 돼요.
- 친구 말을 믿어주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꼭 권하세요.

5. 성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학교폭력(성폭력) 신고 『112』, 『117』
- 경기해바라기 아동센터 www.sunflower1375.or.kr, 031) 708-1375~6
- 성범죄알림e 사이트(<http://sexoffender.go.kr>), 스마트폰 성범죄알림e 앱 다운 설치
- 성매매 알선 권유행위 신고하기(경찰서 112,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사이버 범죄 신고)

6.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①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보십시오.
- ②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면 참고 있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신체 접촉 전 상대의 의사를 항상 먼저 물어보도록 알려줍니다. 상대가 대답하지 않으면 yes라고 생각하는 경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

응답은 yes가 아니라 NO일 수 있습니다.

- ③ 호의를 베푸다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아는 사람이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 단 둘이 집에 있게 하거나 차를 타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 ④ 평소 성 지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무엇이 성폭력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십시오.
- ⑤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무슨 일이든지 부모님께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⑥ 휴대폰 채팅 어플 사용자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휴대폰 채팅 어플의 종류가 많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에게 성범죄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니 채팅 어플 사용 자제를 권유합니다

7. 성교육에 임하는 부모님의 자세

- ①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성교육을 합니다.
- ② 정확한 성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지도하므로 부모님들도 올바른 성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 ③ 부부간에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 앞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합니다.
- ④ 질문에 답할 때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나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성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 질문을 왜 했는지 알아보세요.
- ⑤ 성교육은 과학적인 면과 사회적, 윤리적인 면을 병행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 ⑥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을 찾습니다.

8. 디지털 성범죄 예방

<h3 style="color: #0070C0;">디지털 성범죄</h3> <p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디지털 장비,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제작, 배포, 유통되는 형식의 범죄로</p> <p>구체적으로는 개인의 나체사진이나 성행위 영상 혹은 몰래카메라 제작물 등을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유포형', '제작형', '참여형', '소비형'이 있음.</p>	<p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border-radius: 10px;">안전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width: 30%; text-align: center;"> <p style="color: #0070C0; font-weight: bold; font-size: 20px;">1</p> <p>사이버 공간에서는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나의 개인 정보를 보내지 않는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width: 30%; text-align: center;"> <p style="color: #0070C0; font-weight: bold; font-size: 20px;">2</p> <p>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은 보내거나 전달하지 않는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width: 30%; text-align: center;"> <p style="color: #0070C0; font-weight: bold; font-size: 20px;">3</p> <p>타인이 나오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허락 없이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p> </div> </div>
---	---

9.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중독 예방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중독 예방
<p>음란물은 매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음란물에 빠지게 되면 점점 더 현실과 환상을 혼돈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게 되면서 무감각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에 물들어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음란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음란물을 모두 삭제하고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 I-Net www.greeninet.or.kr 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 사용가능 • 공부방에 컴퓨터가 있다면 거실로 컴퓨터를 옮기세요. • 하루 중 컴퓨터를 켜고 끄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꼭 지키세요. <p>○ 음란물을 보는 아이들 '판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인터넷을 하는 경우가 잦다. • 컴퓨터에 수록된 파일 가운데 확장자가 'GIF'나 'JPG' 등으로 끝나는 그래픽 파일이 많다. • 신용카드 청구서에 알지 못하는 내용과 금액이 청구된다. - 청구업체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web.site' 등으로만 적혀 있는 경우 (음란물업체들은 회사명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음) • 방으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컴퓨터를 끄거나 화면을 바꾸는 등 당황해 한다. <p>○ 아이가 음란물을 보고 있는 걸 알았을 때는?</p> <p>음란물은 우연히 접하지만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다그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음란물이 왜 나쁜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p>

8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

보건교사 김○혜

1. 학생 흡연의 피해

- 일산화탄소 영향으로 두뇌 활동이 저하되고, 학습능력이 떨어집니다.
- 성인에 비해 폐 용적이 작아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가 더 크고, 폐 성숙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 성장기는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흡연으로 인해 세포의 성장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니코틴 중독이 더 심해 금연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 15세 이전 흡연은 25세 이후 흡연자보다 폐암 등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이 2~3배 더 높습니다.
- 어린 시기의 흡연은 유전자변형을 일으켜 2세에게 나쁜 유전자를 전달합니다.



2. 어린이 간접흡연의 피해

- 성장에 영향을 미쳐 키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 급성 호흡기 질환 감염률이 5.7배 높습니다.
-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2배 높아집니다.
- 천식, 중이염, 폐렴에 걸릴 확률이 6배 높습니다.
- 뇌세포 파괴로 기억력,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 장기적으로 청력이 떨어집니다.

1차 흡연	흡연자 본인의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내장, 치매, 뇌졸중, 류마티스 관절염, 췌장염 ■ 폐암, 유방암, 신장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 우울증, 만성스트레스, 정자 손상 등 초래
2차 흡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동맥 손상 ■ 성대 손상, 유방암 등
3차 흡연	옷, 벽면에 붙은 연기로 인한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유해물질과 결합 - 발암 물질 생성 ■ 어린이, 유아, 태아에게 피해 집중 ■ 니코틴 중독, 태아 폐 발달 저해, 천식 등

3. 알코올의 작용

- 뇌기능을 억제시켜 대담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기분을 좋게 합니다.
- 구강점막, 식도, 위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 각 장기와 조직에 머물면서 해를 줍니다.
- 우리 몸 세포의 산소 신진대사와 영양물질의 흡수를 방해하여 영양장애를 초래합니다.
- 꿈꾸는 시간을 감소시켜 숙면을 방해하고 수면장애를 일으킵니다.
- 알코올은 내성이 있어 마실수록 주량이 점점 증가하고 안마시면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4. 음주의 신체적 피해

가. 알코올성 치매

과음하거나 장기간 남용 또는 과용하면 뇌세포 파괴를 촉진시켜 '뇌의 영양실조'를 일으킵니다. 노인성 치매와 비슷하게 심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는데 바로 전날에 한 일에 대한 기억이 없을 만큼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쪽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흔히 충동적이며 화를 잘 내고 폭력적이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

간은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하는 곳으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을 생산, 저장하고 유독 물질을 정화시켜 배설합니다. 술은 간에서 대사되어 신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과량의 음주는 간과 신장을 모두 손상시킵니다.

다. 위염, 위궤양

소화기관의 내부는 물기가 축축한 점막으로 강한 소화효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알코올이 이러한 점막에 손상을 가해 염증과 궤양을 일으킵니다.

라. 생식기계

생식기계 기능 저하로 남성은 성기능 장애, 여성은 불임, 기형아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9 학생인권 조례 및 교권보호

교사 이○혜

학생인권조례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안내

1. 학생인권의 이해

- 가. **인권** :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 나. **학생인권** :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 다. **학생 인권의 보호** : 경기도교육청은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국제인권 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2010년 10월 5일부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라.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
 - 학생인권문제의 상담과 도움
 - 학생인권 보장의 시작: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음
 - 학생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 이용 가능

2. 학생의 권리

-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 받을 권리(사생활의 자유, 비밀의 보호받을 권리, 정보에 관한 권리)
- 양심, 종교의 자유에 따른 의사표현의 자유
- 자치 및 참여의 권리(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학교규정의 재.개정 참여할 권리, 정책 결정의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급식 및 건강에 관한 권리)

3. 학생의 의무

-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 조례를 악용하여 교사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됨

4.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기본정신 준수

- 학생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향
-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의 상호존중 및 배려
-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
- 인권교육: 교육과정 내 교과 관련 인권교육 및 **학기 당 2시간 이상 운영(연간 4시간)**

5. 상록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학교 규칙	학생 생활에 관한사항	●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 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학칙의 개정 절차 등

※ 상록초 학교생활인권규정 :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학교생활인권규정 참고

6.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위해서

-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며, 인권의 시작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의 시작은 학생과 교사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짐을 인식

교권보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2019.4.16., 공포)

- ▶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의 등 시행령 일부 내용이 법률로 상향됨
- ▶ 교육활동 침해행위자 수사기관 고발,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관할청 先 부담 後 구상권 행사, 과태료 부과 내용이 신설
-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외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추가된 내용 등을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119호)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1.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유형

교사의 인격권 침해하는 경우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 사이버상에 교사를 비방하는 행위(카톡, 밴드) ☞ 사생활(이혼, 이성문제 등)을 다른 학부모에게 유포하는 행위 ☞ 수업형태, 생활지도를 비하하는 내용을 유포 ☞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한 폭언, 협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실, 교실에서 폭력,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 시험 출제 경향을 요구,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 달라는 행위 ☞ 생활기록부의 부당한 정정,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 안전사고 피해시 학부모의 부당한 협박이나 민원 제기 ☞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협박, 욕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학생	학생 외 침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는 적용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 고소·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에게 징계권한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법규에 위반하는 심각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고발로서 대응합니다. 이때, 피해교사가 원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형사고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심의·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교원과 침해행위자 모두 희망할 경우 분쟁 조정 절차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외 침해자의 행위를 심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밝히고, 그 결과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3. 교권 침해 그 이후 모습

< 자녀 >	< 학부모 >	< 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권 침해로 정상적 교육 활동에 저해 2) 학교 문화 붕괴로 행복한 학교 생활 저해 3) 담임 교체 등 2차 피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 불안 2) 학생에 대한 PTSD 증후군 발생 3) 정상적 교육활동 지속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부모의 불법 행위로 인한 민·형사 소송처리로 심각한 수업권 침해 2) 소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상적 교육활동 어려움

4. 예방

- ☞ 교권 보호가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임
- ☞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교원의 교권 및 학생 인권 상호 존중 필요

10 방과후학교 운영

교사 전○연

1. 목적

- 어린이들의 소질, 적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취미, 특기신장 교육기회 제공
- 학교 밖의 과외 욕구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 절감
- 학교 시설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2. 상록 방과후 학교 운영 상황

○ 특기적성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수업 일시	학년	정원	수업횟수	분기별(3개월) 수강료	수업 장소		
가야금	수	1:00~2:10	1학년	10명	10회	73,500원 (가야금은 학교에 비치)	1층 예절준비실	
		2:10~3:20	2~6학년	10명				
노래보컬	금	1:50~3:00	1~2학년	20명	12회	81,840원	4층 방과후 2실	
		3:10~4:20	3~6학년	20명				
독서토론 논술	목	1:50~3:00	1~2학년	25명	12회	91,320원 (자체제작 교재포함)	4층 방과후 2실	
		3:10~4:20	3~6학년	25명				
뜨개질 & 바느질	금	1:50~3:00	1~3학년	25명	12회	78,720원 재료비: 39,000원	3층 방과후 1실	
		3:10~4:20	4~6학년	25명				
로봇과학	수	1:00~2:10	1~2학년	25명	10회	68,200원 재료비: 85,000원	3층 방과후 1실	
		2:40~3:50	3~6학년	25명				
미술	목	1:50~3:00	1~2학년	25명	12회	78,720원 재료비: 21,000원	1층 2과학실	
		3:10~4:20	3~6학년	25명				
방송댄스	월	1:00~2:10	1~2학년	25명	11회	75,020원	1층 예절실	
		2:40~3:50	3~6학년	25명				
영어(기초)	화,목,금	1:50~2:30	1~2학년	25명	36회	132,120원 교재비: 15,000~19,440원	신관 2층 영어실 1 (세이프존)	
영어(초급)	화,목,금	2:30~3:10	1~6학년	25명				
영어(중급)	화,목,금	3:10~3:50	(레벨 테스트 후 결정)	25명				
영어(고급)	화,목,금	3:50~4:30		25명				
예쁜글씨 캘리	수	1:00~2:10	1~2학년	25명	10회	65,600원 재료비: 21,000원	1층 2과학실	
		2:20~3:30	3~6학년	25명				
창의과학	목	1:50~3:00	1~2학년	25명	12회	78,720원 재료비: 56,000원	3층 방과후 1실	
		3:10~4:20	3~6학년	25명				
축구	수	1:00~2:10	1~2학년	25명	10회	68,200원	운동장	
		2:20~3:30	3~6학년	25명				
컴퓨터 A	컴퓨터 기초	월,수	12:50~1:40	1학년	25명	21회	78,540원 교재비: 10,000~18,000원 (자격증반 응시료 별도)	3층 컴퓨터실
	OA 마스터	월,수	1:50~2:40	3~4학년	25명			
	스팩 자격증	월,수	2:50~3:40	3~6학년	25명			
컴퓨터 B	코딩 (기초)	금	1:50~2:40	1~2학년	25명	12회	67,320원 교재비: 10,000~12,000원	
	코딩 (게임)	금	2:50~3:40	3~6학년	25명			
영재큐브	화	1:50~3:00	1~2학년	20명	12회	78,720원 재료비(교구포함): 50,000~70,000원	4층 방과후 2실	
		3:10~4:20	3~6학년	20명				
클레이아트	화	1:50~3:00	1~2학년	25명	12회	78,720원 재료비: 48,000원	3층 방과후 1실	
		3:10~4:20	3~6학년	25명				
바둑	화	1:50~3:00	1~2학년	25명	12회	78,720원 교재비: 13,000원	4층 수업녹화교실	
		3:10~4:20	3~6학년	25명				
한자	월	1:00~2:10	1~2학년	25명	30회	무료 1기 신청자 3기까지 수강 기간: 4.8~11.25.	3층 방과후 1실	
		2:40~3:50	3~6학년	25명				

3. 운영계획

가. 운영 기간

2024년 3월 11일 ~ 2024년 12월 23일

구 분	운 영 기 간	비 고
1기	2024년 3월 11일 ~ 5월 31일	
2기	2024년 6월 1일 ~ 8월 31일	여름방학 2주, 방과후 방학 포함
3기	2024년 9월 1일 ~ 12월 23일	

나. 세부 실천 내용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운영기간	1기	3월 11일 ~ 5월 31일	2기	6월 1일 ~ 8월 31일	3기	9월 1일 ~ 12월 23일	4기	
	운영시간	주중	월, 수 13:00~16:30 화, 목, 금 13:50~16:30		방학중	9:30~12:30			
수요조사 실시 계획		10월 21일 ~ 10월 25일							
만족도조사 실시 계획		1학기	5월 20일 ~ 5월 24일			2학기	11월 18일 ~ 11월 22일		

4. 방과후학교 공개

- 1학기: 5.13(월)~ 17(금) 방과후 학교 공개수업
- 2학기: 11.11(월)~ 15(금) 상록문화예술의 날 기간(전시회) 예정
- 추후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1 2023 초등돌봄교실 운영 (오후돌봄)

담당 김○영

1. 「초등돌봄교실」이란?

「초등돌봄교실」이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기구축 되어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에서 1~2학년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조손가정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중심으로 운영

2. 추진 목적

- 가. 맞벌이와 저소득층·한부모·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
- 나.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돌봄·교육 지원으로 여성 인력 활용 극대화
- 다.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3. 본교 돌봄교실 운영 현황

- 가. 오후돌봄: 3학급 운영 (돌봄1반, 2반, 3반)
- 나. 돌봄교실 운영 세부내역

구분	오후돌봄
대상	1~2학년 중 맞벌이 및 저소득 가정의 학생으로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간	2024.03.05. ~ 2024.12.23.(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 예정) (학교, 지역 실정에 맞게 연중(재량휴업일, 돌봄방학 5일 외 방학기간 포함) 개설·운영)
운영시간	방과후 ~ 17:00 내외/1개반 19시 내외 연장운영 (방학중 09 ~ 14:40 운영)
학급편성	3개 학급 (돌봄1반, 돌봄2반, 돌봄3반)
전용교실	돌봄1반(본관 3층), 돌봄2반,3반(본관 2층)
프로그램	프로그램 (보드게임, 창의놀이, 음악줄넘기, 독서논술, 체육) 개인 활동 (과제 수행, 글쓰기, 독서 활동, EBS시청, 블록게임 등)
특별프로그램	보드게임, 창의놀이, 음악줄넘기, 독서논술, 체육
급·간식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미 실시(방학 및 재량휴업일 운영시 개인도시락 지참)
돌봄 담당	김○영

12 학부모 서비스 신청 안내

교사 사○○원

1. 학부모 서비스 및 나이스플러스

학교생활 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학부모 서비스가 4세대 나이스 전환과 함께 학부모 서비스 및 나이스플러스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학부모 서비스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교는 학부모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음을 공지드립니다.

구분	서비스 내역
학교정보	학교정보, 식단정보, 과목 및 담당교사, 학교의 교과용도서 조회, 교육비 납입현황 등
학교생활	학교생활기록 조회, 시간표 조회, 출결정보 조회, 봉사활동내역 조회, 학교스포츠클럽 조회, (고등학교) 대입전형자료 조회 등
평가정보	(초등학교)교과평가 및 성적 조회 (중학교) 학교생활통지표 조회 (중.고등학교) 성적표 조회, 고사별 정오답표 조회, 성적향상도 조회, 학습진단 분석, (고등학교) 표준점수분석표 조회, 성적변화표 분석 등
건강정보	건강기록 조회, PAPS 활동 처방 및 조회, PAPS 평가결과 조회, PAPS 평가결과 이력 조회, PAPS 통계분석 조회, PAPS 지수 조회 등

2. 학부모서비스 이용방법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학부모서비스(<https://parents.neis.go.kr>)에 접속하여 학부모서비스 회원가입을 합니다.
- ※ (구)학부모서비스의 회원은 기존 아이디로 자녀정보 등록 후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 행안부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에 이미 가입된 경우 인증 후 학부모서비스에 가입하면 됩니다.
- ▣ 디지털원패스(<https://onepass.go.kr>)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로, 전자정부의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 모바일 앱 다운 :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원스토어 /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학부모서비스'를 검색합니다.

(2) 학부모서비스 로그인

- (방법1)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 이 경우 일부 자료 열람이 제한됩니다.
- (방법2)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 (방법3) 간편인증 로그인 (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

(3) 학부모서비스의 자녀등록 및 정보제공 요청

- (학부모) 학부모서비스 로그인 → '자녀 등록하기'에서 자녀 학적 정보 입력 후 조회(소속교육청,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이름 등) → 자녀등록 및 정보제공 요청
- (자녀) 나이스플러스(<https://neisplus.kr>) 학생 선 가입 후 로그인 → '나의 정보 관리'의 '보호자 승인관리'에서 학부모 정보 확인 후 정보 열람 '동의'(자녀가 나이스플러스 가입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 온라인 문의(학부모서비스 메인화면 하단에 있는 '사용문의') 또는 중앙상담센터(1600-7440)

13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고○용

1) 목적

-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사이버 윤리 의식을 고취시키며, 인터넷 문화 수준 제고를 통해 사이버 폭력 예방 및 올바른 사용 습관을 강조하기 위함

2) 방침

- 정보통신윤리 교육주간의 취지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실시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과 SNS 등을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 홍보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교육을 진행
- 수업 지도안, 자료는 에듀넷 홈페이지(☞ 정보통신윤리교육)에 탑재된 관련 학습지도안 중 활용 가능한지도안 및 학습 자료를 학교 실정에 맞게 선택 활용
- 토론·토의 중심 수업, 역할극, 글짓기 등 다양한 학예행사와 가족·친구 서약식, 거리 캠페인 등 체험중심 활동을 실시할 것을 당부함

3) 추진 내용

-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 운영
-일시 : 6월 셋째 주
-장소 : 각 교실(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 실시)
-세부 운영 계획

행사명	내용	세부사항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 방송시청 및 학습지 활동		· 방송 내용 -스마트폰 중독의 사례 -스마트폰 중독의 유형 및 문제점 -스마트폰 사용의 올바른 방법 · 영상 시청 후 학습지 완성하기	1-6학년 (영상 시청) 3-6학년 (학습지 활동)
교실에 스마트폰 사용 습관 진단 자료 게시		· 스마트폰 중독 증상, 중독 유형, 중독 현황 및 실태 ·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진단해보고 바른 사용을 위한 방법 이야기 나누기	1-6학년
가정통신문 발송		· 사이버 폭력 예방 및 올바른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 안내	학부모 및 전교생

-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실시(전교생, 연중)
-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신청 규칙 제정 운영(3~6학년, 연중)
- 가정과 연계한 스마트폰 이별 주간 자율 운영(4~6학년, 2024 여름방학)
- 저작권 교육(4~6학년, 연중)
- 교직원 및 학부모 정보통신윤리 연수(연 1회)
-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1,4학년, 6월)

4) 참고 사항

- 홈페이지 상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 배너 탑재 및 팝업 창을 통한 홍보
- 가정통신문 및 SNS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 운영의 취지홍보

5) 유의 사항 및 기대효과

-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정보통신윤리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함.
- 올바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되는 것을 기대함.

1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계획

교사 고○용

1) 목적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보안 활동으로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2) 방침

- 방화벽을 통한 보안정책 수립 및 불필요한 포트를 제거하여 외부에서의 불법적 접근을 사전 차단하기
- 정기적인 백신 및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업무용 PC보안을 강화하기
- 업무용 PC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파일 암호 설정 등 개인정보 파일의 철저한 보호를 위한 조치하기
-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교육 실시하기
-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 (꼭 필요한 자료만 수집할 수 있도록 연수 및 안내)

3) 추진내용

- [상시]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 내 PC지킴이 실행: 매월 세 번째 수요일(월 1회)
 - 내 PC지킴이 실행 결과 보고: 매월 말 (월 1회)
 - 내 PC지킴이 실행 독려 및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사항 안내
- [상시] 개인정보 파일 정비
 - 내용: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개인정보파일등록 (파일명에 따른 보유건수, 보유기관, 담당자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발송 및 수합
 - 대상: 전교생
 - **일시: 3월 초**
-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교직원 연수 실시
 - **일시 : 4월**
 - 연수 내용: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 교육 방법 : 비대면 시청각 자료 및 쌍방향 프로그램 이용
- 주요 정보통신 시설 관리
 - 학내망 장비 및 서버 관리실 통제구역 설정
 - 시스템 및 장비별 관리 책임자 지정, 시스템의 주기적 점검
 - 무선통신 보안 관리(업무용 pc에서 무선 접속장치 사용금지)
- 기타
 -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 학교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수정 관리
(개인정보 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이거나 개인정보 파일명과 보유기간 등의 변경 사항을 최대한 빠른 기간에 반영)

4) 기대 효과

- 정보보안 활동으로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사이버 공격 대응태세 갖추기
-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15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연수

교감 김○식

I 불법찬조금 처분 기준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2020. 3. 1. 시행)

금 액			처분기준 금액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비위유형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					
찬조금 모금 · 조성	모금 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정직	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절차 미이행	부당목적	주와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강등
		정당목적	주의	주와경고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그 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					
찬조금 집행	부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조성절차 미이행 등)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감봉-강등
	정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정직-해임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조성절차 미이행 등)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교직원 개인적 금품. 향응수수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적용					
그 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						
불법찬조금 홍보 미실시			경고					

- ⇒ 모금 조성단계에서의 처분기준 금액은 “연간 모금액”누계, 집행단계에서의 처분기준 금액은 “연간 집행액” 누계를 적용
- ⇒ 찬조금 모금 조성단계와 집행단계 중에서 처분은 높은 양정을 적용
- ⇒ “모금강요”행위에 있어서 “직접개입”은 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직원이 불법찬조금 모금 또는 납부를 직접 요구한 경우, ②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 직접 금액을 할당한 경우, ③ 고액의 기금 납부자의 자녀에게 포상 등 혜택을 주거나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④ 학교 교직원이 불법찬조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관련 장부 등을 관리하는 경우 등이며,
- ⇒ “간접개입”은 ① 특정 학부모 등을 통하여 모금 할당을 조장 또는 지시·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와 관련된 금원사용을 위하여 불법모금하는 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방관 또는 묵인한 경우 등이며,
- ⇒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학교 교직원이 모금과정을 전혀 모르고 금원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함 ⇨ 찬조금을 집행했을 경우에만 해당됨
- ⇒ 불법찬조금관련 처분기준은 문책순위 1순위자에 해당하며, 문책순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적용
- ⇒ 불법찬조금 관련 징계는 감경배제
- ⇒ 학교운동부의 경우 불법찬조금이란 학교운동부 학부모(개인,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품을 학교운동부 학부모(개인, 단체)가 결정을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또는 할당을 통하여 모금)·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찬조금관련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불법찬조금 신고 채널 운영 활성화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 센터 → 공익제보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2
- 안산교육지원청 : www.goeas.kr → 열린공간 → 사이버신고센터
- 전 화 : 031) 412-4620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www.hakbumo.or.kr → 학교길라잡이 → 불법찬조금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r.kr → 민원

16 아동학대 예방 교육

교사 서○희

1 아동 인권의 보장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UN아동권리협약)

2 아동의 4가지 권리

 <p>생존권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p>	 <p>발달권 아동이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놀이와 여가를 즐길 권리</p>
 <p>보호권 아동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p>	 <p>참여권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p>

3 아동학대의 개념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 「아동복지법」 제3조

4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도구를 사용하거나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보호자의 종교 행위를 강요,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성학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등)
방임·유기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아동을 버리는 것>)

5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 언어장애 • 원형탈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 극단 행동, 과잉행동, 발달 지연, 자살 시도
성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거나 앉는데 어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흉진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입천장의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수면장애(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 비행, 가출, 자기 파괴적 행동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지연, 발달지체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냄새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을 구걸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6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 112(경찰서), 031-402-0442(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상담 및 현장 출동·조사 등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82(경찰민원콜센터) : 아동학대 상담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도록 노력하세요.

☺ 화가 났을 때에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 꼭 10을 세고, 정말 안 되는 건은 단호하게 '안돼' 라고 말해주세요.

17 가정폭력 예방 교육

교사 서○희

1 가정폭력의 개념

- 일반적 정의: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양상을 띠어 국가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 가정폭력 처벌법 2조: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태만, 의무불이행), 경제적 학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함



3 가정폭력 신고의무 규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4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법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112에 신고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 치료 연계 등이 이루어짐.

- ▶ 피해자 긴급구호 : 여성긴급전화 (☎ 1366), 가정폭력 상담·신고(☎ 117)
- ▶ 무료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 피해치료 지원 : 지자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

5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법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①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② 주거, 직장에서 100m 내 접근금지 ③ 전화, 전자 우편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재발 우려시 경찰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①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② 주거, 직장에서 100m 내 접근금지 ③ 전화, 전자 우편 등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 ⑤ 유치장(또는 구치소) 유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1호~3호)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임시조치 5호(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①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② 주거, 직장에서 100m 내 접근금지 ③ 전화, 전자 우편 등 접근금지 ④ 친권행사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 가능한 지원제도 : 보호시설(쉼터)입소지원, 무료 법류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의료지원, 아동 취학지원, 주민등록 열람제한, 주거지원

6 가정폭력 대처법

- 아동기의 중요성 인식 - 아동기의 가정폭력·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서 아동의 건강, 발달,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는 세대간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 연령 별 아동 특성 이해 - 자녀가 가진 능력이나 발달 이상으로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처럼 높은 기대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다양한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올바른 자녀양육방법 습득 -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 체벌과 훈육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 부모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동에게 그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정서적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자살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해 행위로 어느 정도 자살 의도를 갖고 그 동기를 인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한 상해라고 정의합니다. (WHO, 1968) 2020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10.9%의 학생은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2.0%는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어른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예민하게 살펴보면 자녀의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죽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 보이는 언어, 행동, 정서 표현의 신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런 징후가 감지되었을 때는 즉각적,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죽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는 시기 : 만 10세 경

- 만 10세 이전의 자녀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는 호소일 수 있습니다.
- 죽고 싶다는 자녀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2 청소년기 우울증의 특징

- 심한 짜증, 분노, 기분의 변덕이 심함
- 학업 성적 저하
- 또래관계 위축, 등교 거부
- 과도한 수면, 폭식
- 비행과 중독, 성적 문제

3 청소년기에 자살이 많은 이유

-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지적 변화
- 자아발달의 미숙, 과도한 입시 경쟁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갈등
- 가족 구성원 간의 결속력 약화
- 자살에 대한 태도의 변화

4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보이는 징후

- 1) 식사와 수면 습관이 변합니다. 식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 합니다.
- 2) 짜증이 늘어나고 침울하고 우울하게 보입니다.
- 3)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 4) 일기장이나 SNS에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 5) 지각, 등교 거부 등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 6) 집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 있습니다.
- 7)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 8) 스스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위험한 행동을 보입니다.
- 9) 사후 세계를 동경하거나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10)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 아끼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11) 방에 혼자 있으려고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합니다.
- 12) 이상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갑자기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5 자녀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1) 반드시 직접적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너 요즘 많이 침울해 보이는데, 혹시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니?”

“네가 죽고 싶다고 써 놓은 메모를 봤어. 너무 걱정 되는구나”

2) 아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충분히 들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세요.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지, 죽으려는 행동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자살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3)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고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며, 도와주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죽겠다’는 자녀의 말이 단순한 투정으로 느껴지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 서서 진지하게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엄마(아빠)가 널 어떻게 도와면 좋을까?”

“그런 일이 있어서 네가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거구나.

그 일을 엄마(아빠)가 도와줄테니 함께 해결해 보자.”

“내가 보기엔 네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함께 병원에 가보지 않을래?”

4) 자녀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해 줍니다.

“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어. 도와줄게”

“네 생각보다 우리 가족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너에겐 친구들도 있잖아.”

5)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활동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하고 싶어 하고 잘하는 활동을 독려하되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만일 어느 시점에서 자살을 감행하려는 전조나 불안한 기분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19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녹색, 폴리스)

교사 이○혜

1. 목적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동 대상 범죄 및 학교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유해환경에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임.

2. 다양한 발생 사례

가. 스쿨존 내 학생 교통사고 사례 : 아이들은 잘 뛰어다녀요

- ① 무단횡단을 하는 어른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
- ② 초록불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
- ③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를 지다가는 경우
- ④ 횡단보도 앞에 주·정차된 차 앞을 지나가는 경우
- ⑤ 통학버스 또는 부모님 차량에서 내려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경우

나. 학교 교육활동 중 위험 사례 : 아이들은 몸집이 작아 잘 안보여요

- ① 차도로 굴러가는 공을 쫓아가는 아이 ▶ 어른의 도움을 받도록 함.
- ② 차 밑에서 공(물건)을 빼고 있는 아이 ▶ 어른의 도움을 받도록 함.
- ③ 차 뒤에서 놀고 있는 아이 ▶ 위험한 장소에서 놀지 않도록 함.
- ④ 공사장 옆에서 놀고 있는 아이 ▶ 위험한 장소에서 놀지 않도록 함.

※ 사고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최초 발견자	→119 신고 및 사고 2차 피해 방지 →학교 교직원(담당교사 등)에 즉시 연락 ※ 어린 학생들은 사고가 나면 혼이 날까봐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미한 사고라도 꼭 선생님 또는 부모님께 연락하고 치료를 받도록 해요.
---------------	---

다. 학교 재난 발생 사례

학교 화재, 수상한 사람이 학교에 진입(테러, 유괴 등), 지진, 폭발, 붕괴 등

※ 재난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발생 최초 목격자는 “불이야!”하고 외치고 비상벨을 누른 후, 119에 신고(담당교사에게 즉시 연락) ◦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 소화기(소화전 등)를 이용하여 진화 시도(단, 개인의 안전과 학생 대피 우선) ◦ 건물 안에서 대피할 때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승강기는 질식 우려, 계단 이용)
테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방문자는 반드시 방문대장 기록 및 방문증 수령 ◦ 폭발물이 의심되는 수상한 가방은 열어보지 말고 112에 신고(담당교사에게 즉시 연락) ◦ 테러범 발견 시, 112 신고, 교내에 즉시 알림(개인의 안전 확보 필수)
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발생 시, 가방 및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 ◦ 건물 안에 있을 시, 머리를 보호하며 운동장으로 대피(계단 이용) ◦ 건물 밖에 있을 시,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과 거리를 두고 넓은 공간으로 대피 ◦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시,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으로 이동 ◦ 해안에서는 해일에 대비하여 높은 곳으로 이동

<p>폭발 붕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물 및 붕괴 위험 시설물 발견 시, 즉시 교육행정실 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개인의 안전 확보 필수) ◦ 유리 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머리와 얼굴을 보호 ◦ 부상자는 추가 폭발, 붕괴 등 2차 피해에 대비하여 가능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응급처치(119 신고, 담당교사 연락 등)
-------------------------	---	---

※ 안전한 근무를 위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p>여름철 폭염</p>		<p><폭염 대비 3대 건강 수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자주 마시기 ◦ 시원하게 지내기(그늘, 실내 등) ◦ 더운 시간대에 휴식하기
<p>겨울철 빙판길</p>		<p>※ 학교 정문 및 진입로에 빙판길 발견 시에는 학교 담당 교직원에게 연락하여 안전사고에 예방합니다.</p> <p><행동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기 ◦ 장갑을 끼고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기 ◦ 평소보다 보폭을 10~20% 좁게 걷기
<p>봄철 미세먼지</p>		<p><행동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아침 기상상황 확인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과 얼굴 씻기 ◦ 충분한 수분 섭취
<p>여름 및 가을 호우, 태풍</p>		<p><행동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파손이나 누수 발견 시, 담당교직원에게 연락 ◦ 집중호우 또는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인 웅덩이, 낙하물 등에 유의 ◦ 걷는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 자제, 주변 경계
<p>응급처치</p>		<p>※ 학교에서 쓰러져있거나, 크게 다친 사람을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담당교직원에게 반드시 연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의 응급처치교육을 받아 응급처치가 가능하다면 아래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상황에 따라 조치하고, 그렇지 않다면 119 또는 학교 교직원의 도움을 받음 <p><응급처치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2차 피해, 상황에 대한 오해의 소지 등) ◦ 응급 상황일 때는 즉시 119에 연락한다. ◦ 함부로 물이나 음식물, 약을 먹이지 않는다. ◦ 환자에 대한 생사의 판정을 하지 않는다. ◦ 환자의 몸에서 나온 구토물이나 혈액 등이 자신의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되, 이로 인해 2차 손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옮기지 않는다. ◦ 최종적으로는 전문 의료인의 처치에 맡긴다.
<p>※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방법 (환자의 상태가 위급할 때 즉시 119에 도움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달 내용 : 사고 장소 (가능하다면 명확한 주소), 주요 건물, 사고 종류, 환자 상태, 부상자 수 등 통보(일반적으로 부상자 1명에 구급차 1명) ◦ 구급차 도착 전까지 전화로 응급처치 요령을 지도 받을 수 있음. ◦ 신고 후에는 구급차 도착 전까지 연락유지를 위해 다른 통화는 자제하고 먼저 전화를 끊지 않음. 		

1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유형	예시 상황
신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협박)
금품 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대행, 게임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정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사이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 글’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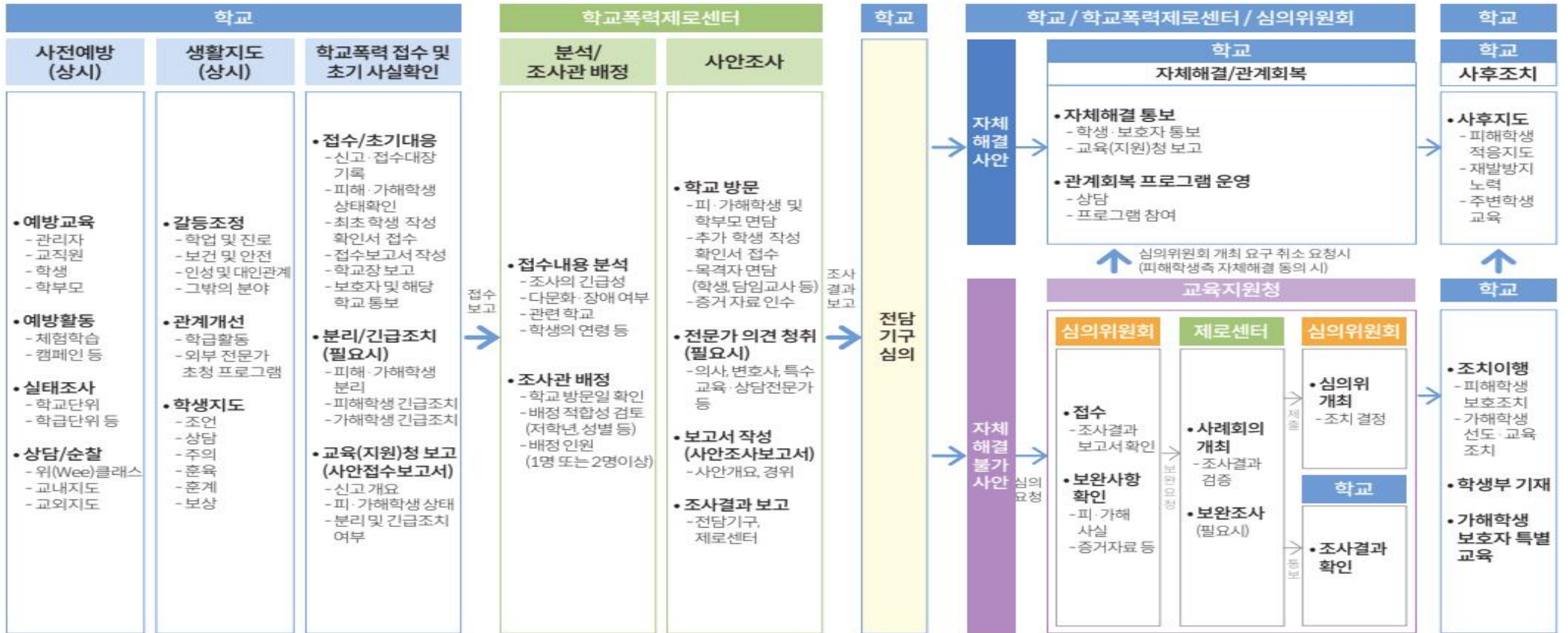
이렇게 예방해요

- ▶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34.2%)이 가장 높습니다.(최근 사이버폭력 비율 증가) 가정, 학교에서의 언어순화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 ▶ 따뜻한 격려와 칭찬으로 학생의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 ▶ ‘몰라서, 장난으로, 욕해서’ 괴롭혀도 폭력임을 가르칩니다.
- ▶ 사소한 괴롭힘,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 ▶ 쌍방사안 주의 :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하면 자신도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므로 상황을 피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가르칩니다.
- ▶ 학생, 학부모, 교사 모든 공동체의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안내(상세)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과정



□ 피해학생·가해학생 지원(학교, 안산교육지원청)

사전예방	갈등조정·관계회복	사후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학기당 1회) • 도래활동, 체육·예술활동 등 활동중심 예방활동 • 어울림(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 교육과정 반영(연 8차시 이상, 사이버폭력예방 2차시 이상 포함) • CCTV, 학생보호인력 등 안전인프라 구축 • 신고방법 홍보: 112, 117, 학교전담경찰관, 담임교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조정·관계회복(학교,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프로그램 - 이해와 공감, 반성과 용서를 통한 실질적 치유와 회복 도모 - 관련학생 및 보호자 간 합의문 작성과 이행 요청 -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공동의 노력 진행 ※ 피해·가해관련 학생 및 보호자 동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학생 보호 및 적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학생 보호조치(상담, 치료지원기관 연계) • 가해학생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선도조치의 이행 -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필요 시)

- 학교폭력 관련 외부 상담기관: 117(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1388(청소년 상담), 상록초등학교 학교전담경찰관
- 학교폭력 신고 및 갈등조정 관련 문의: 상록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031-487-5743)
- 학교폭력 사안 심의 및 조치 불복 관련 문의: 안산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031-412-4555~4557)

21 감염병 예방 교육

보건교사 김○혜

1.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병명	병원체	감염경로	전염 가능 기간 (등교중지 기간)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두분비물, 객담 → 비말감염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 경과할때
수두	수두바이러스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모든 수포에 가피 형성될 때까지(약 7일)
유행성 이하선염	멤프스바이러스	타액 → 비말감염	증상발현 후 5일까지 (이하선종창 소실일 까지)
풍진	풍진바이러스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발진이 나타난 후 7일까지 (발진 소실 일까지)
유행성 각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	눈곱, 분변 → 접촉감염	격리 불필요(개인위생수칙)
성홍열	A군B군용혈성 연쇄상구균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항생제 치료 시작하고 24시간까지
홍역	홍역바이러스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발진이 나타난 후 4일까지 (해열 후 3일 경과까지)

2.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연락한 후 병원에 갑니다.
- 감염병 진단시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하고 집에서 안정을 합니다.
: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 치료, 완치 후 병원에서 받은 '등교중지 기간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출석 인정)
- 등교중지 기간보다 미리 등교 시에는 감염성이 없다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제출합니다.
☞ 학생에게 발생하는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출석 인정이 됩니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및 올바른 손 씻기

- 1830 손 씻기: 하루에 8번 30초간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손씻기
- 기침 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안쪽 소매로 가리기
- 면역력 강화: 수분 섭취, 아침 식사, 적절한 수면 및 운동
- 눈, 코, 입 주변에 손을 가져가는 습관 가지지 않기
- 의심 증상 시 조기 진료로 확산 방지

4. 입학 전 챙겨야 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백신 종류	4세	6세	11세	12세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DTaP 5차			
	Tdap/Td			Tdap/Td 6차	
폴리오	IPV	IPV 4차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MMR 2차			
일본뇌염	IJEV(불활성화 백신)		IJEV 4차		IJEV 5차
	LJEV(약독화 생백신)	LJEV 2차 * 접종 권장연령(생후 24~35개월)에 접종하지 못했어도 빠른 시일 내 접종 권장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	HPV			HPV 1차~2차	

1. 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 기관

- 공공기관, 언론기관, 금융 등

나.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 공적 업무 종사자

- 적용 대상 기관의 직원과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2. 부정 청탁의 금지(제5조)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금지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3.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제10조)

가.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수수 금지 금품 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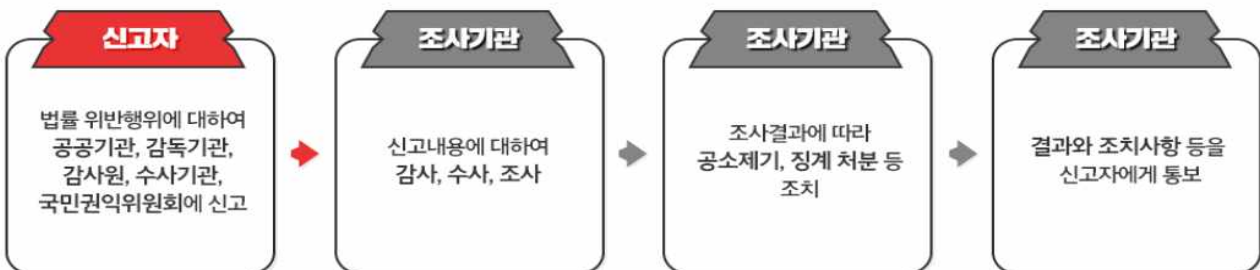
○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나. 직무 관련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가.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나. 신고자 보호·보상

-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원상회복 조치
- 신분 비밀보호, 신변 보호 및 책임감면

5. 징계 및 벌칙

구분	제재 수준	비고
부정 청탁 금지	- 2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청탁유형별 별도 제재기준 적용
금품 등 수수 금지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수수 금액의 2~5배 과태료 -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1회 백만 원 또는 연 3백만 원 초과 수수(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음) - 1회 1백만 원 이하 수수(직무 관련) -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교감 김○식

1.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금지, 책임의 감면, 인사 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 신고 보상 안내 >
 031-249-0999 / e-mail : hotline@goe.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부조리 신고 및 상담 >

- 관계 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내용: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 비밀보장 대상 및 벌칙 사항

구분	비밀보장 의무 위반 벌칙	비밀보장 대상
부패 방지 권익 위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와 협조자* *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
공익 신고자 보호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자 등* * 공익신고자와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진술·증언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청렴 경기교육, 공익제보를 통한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 공익제보란?

공익제보(whistle-blowing)란 말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익제보자(whistle-blower)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등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그 밖의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2017.4.18.)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부패행위도 보호·보상제도 적용대상에 포함

■ 공익제보는 이렇게

신고방법 [Hot-line]
 • 전화 031) 2490-9999
 • 이메일 hotline@goe.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goe.go.kr>
 「부조리 신고 및 상담」

당신의 용기,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제도가 지켜드립니다.

■ 공익제보자 보호합니다. 안심하고 제보하세요.

-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 제보와 관련한 위법행위 발견 시 제보자에 대한 책임감면 가능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제보자에 대한 보상 기준(지급한도액 최대 30억원)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

신고유형	지급 기준액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수수액의 10배 이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경기도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추징액 또는 한수액의 20%이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성탁 행위	대가 수수액의 10배 이내 알선·성탁 행위 신고 : 300만원 이내
그 밖에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부조리 근절을 획기적으로 기여 : 3억원 이내 부조리 근절에 기여 : 1천만원 이내

- 신고기한 : 부조리행위 발생일부터 3년(횡령·유용은 5년)
- 공익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최종결정된 금액을 지급

청렴 경기교육,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공직비리신고(Hot-line)
hotline@goe.go.kr / 031-2490-999

경기도교육청
GOEUNGWON PROVINCE OF EDUCATION

24 존중과 배려의 교육환경 조성 예방 교육(갑질 근절)

교감 김○식

1. 갑질 개념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

2. 유형

- (이익 추구형)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 ※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 편의 요구, 상대 기관에 책임·비용전가 등
- (불이익 처우형) 을(乙)에게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부당한 전보 발령,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 지시
 - ※ 폭언 폭행 등 인격모독, 성희롱·성추행 성폭력 등

3. 주요 사례

- 공익의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불만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악의적으로 반복적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
- 민원 제기 시 직원들에게 고성이나 반말, 화풀이하는 식의 행위
- 정당한 훈육에 대해 무조건 항의 및 질책하는 행위
-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 강압적인 말투로 상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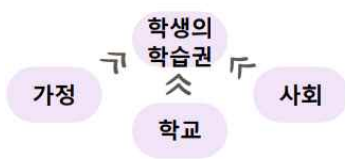
2024년 달라지는 점

1.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객관성 강화
2.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부과 ⇒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간섭 억제

I.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

1. 교육활동보호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밑거름이 됩니다.

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때 수업의 질이 유지되고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의 주목적은 안정적인 수업과 학습권의 보장입니다.

나. **배움과 실천의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내면화·인격화하는 과정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교원은 제자를 사랑하고 학생은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는 학생의 올바른 인격 성장에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다.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선생님이 행복하면 학생이 행복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지도에 매진할 때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안정된 학교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예]

1. 폭행상해: 교원의 신체를 직접 때리거나 밀치거나 먹살을 잡고 흔드는 경우
2. 협박: 교원에게 '교직을 그만두게 만든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거나 말없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목을 겨누는 경우
3. 명예훼손: 다른 학부모들에게 '교사가 특정 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과거 징계 사실을 유포한 경우
4. 모욕: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거나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어 부르는 경우
5. 손괴: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며 학교 기물을 망가뜨리는 경우, 교사의 문서나 파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
6. 성범죄: 휴대전화로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거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경우, 수업 중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7. 불법정보 유통: 교원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한 경우,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경우, 교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8. 공무집행 방해, 부당한 간섭, 의도적인 수업방해, 악성민원제기, 교원의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는 행위, 무고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 가. 안산교육지원청 안산교권보호센터에서 심의·의결 또는 분쟁조정
 나.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25조)

-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자 미적용)

- 다.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 제26조) **2023.9.27. 신설**

- 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피해교원 보호조치 중 보호조치 비용 (교원지위법 제20조 제5항, 2023.9.27. 신설)

- ①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② 교원이 도교육청에 치료비 등을 선지급 요청할 경우 도교육청은 비용을 부담한 후 침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Ⅲ.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1.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교육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습관 개선,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속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되는 바람직한 상호관계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